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50
----------	------

제출년월일 : 2021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에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함.
(안 제2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및 「지방세징수법」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1. 5. 27.~6. 16.)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자동차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 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 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 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 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 유에 대한 <u>자동차세 및 주민세</u> <u>재산분에</u>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 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20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 실납부자) ----- ----- ----- ----- ----- ----- ----- ----- ----- <u>자동차세</u> ----- ----- ----- ----- -----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의 여지가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제과 나은산(02-2133-3357)